

 교육부		<h1>보도자료</h1>	
보도일시	9.28(목) 국회 본회의 의결이후	담당부서	규제개혁법무담당관
배포일시	2017. 9. 28.(목)	담당과장	정오채 (044-203-6648)
대변인실	044-203-6588	담당자	사무관 김혜민(044-203-6683)

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, 이제는 평창입니다.

- 9.28일, 교육부 소관 2개 법안, 국회 본회의 통과 -

- 「과학교육진흥법」 전부개정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핵심 교과 진흥
- 「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학교 밖 대학교 기숙사 이용학생 전기요금 인하 근거 마련

-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(9.28일)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하는 「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」,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「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교육부 소관 법안 2개가 의결됐다.
- 이번에 개정된 「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」은 「과학교육진흥법」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핵심교과인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의 진흥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과학·수학·정보 융합위원회의 설치와 교육자료·전용교실 확보 등 과학·수학·정보 교과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였다.
- 「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은, 대학교 밖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에게도 대학교 내 기숙사와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.
 - 또한, 그동안 학자금 지원사업에 한하여 소득분위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과 기숙사생 선발에 저소득층 대학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(☎044-203+내선번호)
융합교육지원팀	팀장 정윤경(6177), 신동진 사무관(7022)
교육시설과	과장 윤석훈(6308), 박수민사무관(6307)

1 과학교육진흥법(전부개정)

□ 「과학교육진흥법」 전부개정을 통해 「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」을 마련함으로써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적 교과인 과학·수학·정보 과목의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제명을 「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」으로 변경하여, 기존 「과학 교육진흥법」상의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, 연구기관 지정, 국제협력 등의 항목에 수학·정보 부분이 추가되어 개별 교과의 발전을 유도하였다.
- 또한,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, 그 이행을 점검·평가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정책추진이 되도록 하였으며,
 -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의 조정·융합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·융합적 인재양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.
- 교재·교육자료·전용교실의 확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·수학·정보 교과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였으며,
 - 기존의 교구를 교육자료로 확대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자료 확보로 학생의 학습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.

□ 동 개정으로 인해

-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핵심적 교과인 과학·수학·정보 과목의 체계적 발전으로 미래사회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- 전문성 있는 교육 연구기관 지정과 과학실·컴퓨터실 등의 확충, 교재·교육자료 확보 등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.

<참고> 과학교육진흥법 개정사항

	 공공정보	 공공참여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제·개정 법률	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	
과학교육진흥법		융합교육지원팀장 정윤경(6177) 신동진 사무관(7022)	

참고

「과학교육진흥법」 개정 사항

구분	관련 조항	개정사항		주요내용	기대효과	비고
		기존법	개정법			
「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진흥법」으로 제명 변경	쑈 조항	기존법 쑈 조항내 ‘과학교육’을,	‘과학·수학·정보 교육’으로 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과학교육진흥법에 수학·정보 교육을 추가하여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학·정보 교육과 관련하여,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(제5조), 연구시설 이용(제6조), 교육 연구기관 지정(제8조), 재정지원(제9조), 교재·교육자료 등 확보(제10조), 국제협력(제11조)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핵심교과인 과학·수학·정보교육의 진흥으로 학생의 미래 역량 증진 	
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의 기본방향	개정법 제4조	신설	제4조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학·수학·정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(제1항~제3항), 개별 교과별 교육과 더불어 융합을 통한 창의 인재 양성 추진 규정(제4항)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제4조 ④ 과학수학정보의 교과별 교육과 더불어 두 교과 이상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. 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학·수학·정보교육에서 개별 교과가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, 이에 대한 융합을 통해 창의 인재 양성 추진 	
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융합위원회 설치·운영	개정법 제7조	신설	제7조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융합위원회 설치·운영으로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(구성 등은 대통령령 위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융합위원회 설치로 종합적인 발전 방안 수립 및 책임 있는 정책 추진 	

				<p>※ 융합위원회의 심의 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.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·융합에 관한 사항 3.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	
교재·교육자료· 전용교실 확보	개정법 제10조 (기존법 제9조)	과학교육을 위한 교재·교구 확보 조치규정을,	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· 교육자료·전용교실 확보에 대한 규정 으로 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존법의 ‘교구’를 ‘교육자료(소프트웨어 포함)’로 확대하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(제1항), 전용교실 확보 노력을 신설(제2항)하여 교육 환경 개선 추진 <p>제10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·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자료 확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 향상 유도

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(조항 신설)

□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을 통해 학교 밖 기숙사의 전 기요금 감면과 인재육성 및 기숙사 관련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소득분위 정보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학교 밖에 건립되는 기숙사도 대학교 내 기숙사와 동일하게 교육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.

○ 학자금 지원 사업에 한하여 소득분위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, 장학재단법 일부개정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기숙사 입주대학생 선발 시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현재, 고양시에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(수용규모 1,002명)를 운영 중이며,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서울시에 제2호 대학생 연합기숙사(수용규모 1,000명)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.

□ 동 조항 신설로 인해

○ 교육용전력 요금으로 적용받는 혜택은 기숙사 입주생들에게 기숙사 비용 부담 완화, 일부 급식비 보조금 지급 및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등 학생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.

○ 또한, 소득분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숙사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심사시간 단축 및 객관성 확보 등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게 되었다.

<참고> 기숙사 유형별 수용률 및 기숙사비 현황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	
	제·개정 법률	담당자 연락처(☎044-203+내선번호)
교육시설과	교육시설과장 윤석훈(6308) 박수민사무관(6307)	

참고

기숙사 유형별 수용률 및 기숙사비 현황 등 ('16.4월 기준)

□ 설립별 / 지역별 기숙사 수용률(운영기준)

- 설립별 수용률(평균 20.3%) : 23.1%(국·공립대) > 19.4%(사립대)
- 지역별 수용률(평균 20.3%) : 23.9%(비수도권) > 15.0%(수도권)

구 분		전체 대학수	기숙사 운영 대학수	재 학생수	기숙사 수용가능인원	수용률
설립별	국·공립대	39	39	394,189	91,078	23.1%
	사립대	199	175	1,271,496	246,885	19.4%
지역별	수도권	110	87	679,421	102,166	15.0%
	비수도권	128	127	986,264	235,797	23.9%
소 계		238	214	1,665,685	337,963	20.3%

□ 유형별 월평균 기숙사비

구분	국립대		사립대			행복(연합) ²⁾
	재정(직영)	민자	재정(직영)	민자	행복(공공) ¹⁾	
2인실 (1인당)	133천 원	168천 원	198천 원	318천 원	221천 원	202천 원 (대학지원금 포함)

- 1) 공공기금(주택도시기금, 사학진흥기금) 90% 이하, 대학 자부담 10% 이상
- 2) 공공기금(주택도시기금, 사학진흥기금) 100%

□ 행복연합기숙사 추진 현황 ('17.9월 기준 / 사학진흥재단 4건, 한국장학재단 2건)

구 분	사업부지	총사업비	재 원	수용인원	진행경과
서울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	국·공유지 (홍제동)	159억 원	주택기금 53% 사학기금 47%	516명	운영 중('14. 8월 입주, 한국사학진흥재단)
한국장학재단 대학생연합생활관	국유지 (고양 삼송지구)	326억 원	민간기부금 100% (은행연합회)	1,002명	'17. 3월 개관 (한국장학재단)
부산 행복연합기숙사	국유지 (부경대 내)	417억 원	주택기금 53% 사학기금 37% 국고지원 10%	1,528명	'17. 3월 개관 (한국사학진흥재단)
서울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	국유지 (동소문동)	204억 원	주택기금 53% 사학기금 47%	750명	시공업체선정 중 ('20. 3월 입주예정, 한국사학진흥재단)
천안권 행복연합기숙사	공유지 (천안시, 천안역 인근)	165억 원	주택기금 53% 사학기금 47%	600명	공사진행 중 ('20. 3월 입주예정, 한국사학진흥재단)
(가칭)학생종합복지센터 (대학생연합생활관)	국유지 (응봉동, 한양대역 인근)	400억 원	공공기관기부금 100% (한국수력원자력)	1,000명	'17년 추진 중 ('20. 3월 입주예정, 한국장학재단)

※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의3(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)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6.5.29.]